

公務員教育訓練機關의 教官確保現況과 改善方案

Ⅱ. 水產專門職의 派遣勤務에 관한 說問調查

張哲豪 · 金連植 · 金永道

(水產公務員教育院)

I. 序論

公務員 教育訓練機關에서의 教官確保方法으로는 人事交流에 의한 任用, 派遣勤務, 外來講師招聘 等이 있다.

그러나, 현행 教官任用制度는 職級, 學歷, 經歷 위주로 이루어지며, 教育訓練機關에서 필요로 하는 人事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教官의 質的水準 確保에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總務處와 教育訓練機關이 教官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여러가지 努力을 하고는 있으나 전체 教官의 規模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하고, 대부분이 教授技術向上 및 일반 素養涵養에 치우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公務員教育이 지향하고 있는 職務能力의 專門性 제고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教官의 專門性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일부 外來講師招聘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것 또한 財政 형편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人事規程의 改正이나 組織의 改編에 의한 人事權의 獨立, 教育訓練機關의 教官 專門職制 新設에 의한 別途 任用 등의 적극적 努力도 있어야 할 것이나 現實的으로는 그것도 實現可能性이 희박하다. 그러므로 實現可能性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現行制度를 活性化 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制度가 專門職 公務員의 教育訓練機關 教官要員으로서의 派遣勤務制度이다.

國家公務員法 제32조의 4에는 [國家의 各級機關의 長은 國家的事業의 수행 또는 그 業務 수행과 관련된 行政支援이나 研修 기타 能力開發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所屬公務員을 다른 國家機關, 公共團體, 政府投資機關, 國內外의 教育機關 또는 研究機關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派遣勤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公務員任用令 제41조에서 公務員教育訓練機關의 教官要員도 그 適用對象範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派遣期間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制度는 일반 行政機關에서 통상 下部機關 소속 公務員을 上級機關에 行政支援을 목적으로 파견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公務員教育訓練機關에 있어서의 이 制度의 활용은 매우 적어 1988년도에 3명,

1990년도에 10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制度는 1년 이상 派遣의 경우에는 總務處長官의 承認에 의해 별도의 定員이 인정되고 있어서 活用方法 여하에 따라서는 派遣對象者의 소속 기관에서 業務의 空白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운용할 수 있는 制度이다.

한편 水產公務員教育院에 국한하여 보면 教官으로 任用可能한 職種은 行政職과 水產職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 범위안에서만 教官을 任用해서는 보다 專門性을 갖춘 教官의 確保가 곤란하다고 보아진다. 한편, 水產廳 산하 機關에는 水產研究職, 漁村指導職, 水產物檢查職 등 高度의 專門性을 갖춘 公務員들이 상당수 있는데, 制度上 이들을 教官으로 직접 任用할 수는 없지만 派遣勤務制度를 통하여 教官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에 관하여 派遣勤務對象者들을 대상으로 設問調查한 바에 관하여 논의한다.

II. 設問調查의 方法

政府組織法上 中央行政機關의 산하에는 研究 試驗 또는 指導機關이 상당수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속되는 研究 또는 指導職 公務員은 대부분 專門職에 해당되므로 公務員教育訓練機關의 專門性 確保를 위한 教官要員派遣 대상이 될 수 있다.

水產廳의 경우도 그 산하의 國立水產振興院에 水產分野 研究를 담당하는 水產研究職이 239명, 漁村指導를 담당하는 漁村指導職이 254명 있고 또, 國立水產物檢查所에는 水產物檢查를 담당하는 檢查職이 134명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專門性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知的水準이 매우 높아 教官으로서의 適任者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1992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公務員教育院에 教官으로 파견되는 것에 관한 意見을 청취하기 위하여 <부록>과 같은 내용의 設問調查를 실시했는데, 그 對象者數는 총 627명이며, 應答者는 441명이어서 應答率은 70.3%였다<표 1>. 따라서 이 조사의 信賴度는 충분히 높다고 인정할 수 있다.

<표 1> 設問調查에 대한 應答狀況

機 關	職 級	對象者數	應答者數	應答率
國立水產振興院	水產研究官	58	40	74.0
	水產研究士	181 } 239	137 } 177	
國立水產物檢查所	漁村指導官	25	16	63.0
	漁村指導士	229 } 254	144 } 160	
計	5級 이상	18	7	77.6
	6級 이하	116 } 134	97 } 104	
計		627	441	70.3

III. 設問調査의 結果

1. 教官任用 資格을 기준으로 한 調査

專門職 公務員의 派遣에 의한 教官任用은 우선 현행 법령이 정하는 資格基準에 합당해야 하므로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最終學歷, 公務員勤務經歷, 現職勤務經歷, 年齡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教官任用資格에 관한 조사 결과

(1) 最終學歷

區 分	合 計	高卒以下	專門大卒	大 卒	碩 士	博 士
水產研究職	177(100)	11(6.2)	15(8.5)	56(31.6)	76(43.0)	19(10.7)
漁村指導職	160(100)	54(33.8)	72(45.0)	31(19.3)	3(1.9)	-
水產物檢查職	104(100)	38(36.5)	29(27.9)	30(28.9)	7(6.7)	-
合 計	441(100)	109(23.4)	116(26.3)	117(26.5)	86(19.5)	19(4.3)

(1) 속은 백분율

(2) 公務員勤務經歷

區 分	合 計	3년 이하	3~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水產研究職	177(100)	26(14.7)	28(15.8)	26(13.6)	34(19.1)	63(35.5)
漁村指導職	160(100)	12(7.5)	6(3.8)	20(12.5)	61(38.1)	61(38.1)
水產物檢查職	104(100)	9(8.7)	2(4.9)	8(7.7)	32(30.8)	53(50.9)
合 計	441(100)	47(10.7)	36(8.2)	54(12.2)	127(28.8)	177(40.1)

(3) 現職 勤務經歷

區 分	合 計	3년 이하	3~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水產研究職	177(100)	33(18.6)	30(6.9)	24(13.6)	35(19.8)	55(31.1)
漁村指導職	160(100)	12(4.5)	9(5.6)	20(12.5)	66(41.3)	53(33.1)
水產物檢查職	104(100)	9(8.7)	5(4.8)	8(7.7)	33(31.7)	49(47.1)
合 計	441(100)	54(12.2)	44(10.0)	52(11.8)	134(30.4)	157(35.6)

(4) 年齡

區 分	合 計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水產研究職	177(100)	19(10.7)	101(57.1)	35(19.8)	22(12.4)
漁村指導職	160(100)	12(7.5)	95(59.3)	46(28.8)	7(4.4)
水產物檢查職	104(100)	10(9.6)	44(42.4)	20(19.2)	30(28.8)
合 計	441(100)	41(9.3)	240(54.4)	101(22.9)	59(13.4)

이것을 보면 最終學歷은 專門大卒 이상이 77%, 大卒 이상이 50%, 碩士 이상이 24% 정도이고, 公務員勤務經歷이나 現職勤務經歷은 3년 이상이 89%, 6년 이상만도 81%나 되어 資格基準을 學歷은 大卒 이상, 經歷은 6년 이상으로 보더라도 적격자가 상당히 많으며, 年齡도 전체의 77%가 30~40대에서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專門職의 教官要員 派遣制度에 대한 의견

어떠한 職務이든 制度가 아무리 잘되어 있더라도 從事者의 자발적 參與意識이 높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할 것인데, 教官으로의 派遣勤務에 대한 參與意識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 바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專門職公務員의 教官要員 派遣制度에 대한 의견은?

區 分	合 計	教育訓練의 專門性提高 및 專門職務 經驗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필요요.	補職과 職務訓練을 연계한 實用education을 실시 할 수 있어서 바람직.	專門性은 있으나 教育에 관한knowledge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職務遂行의 흐름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함.	無應答
水產研究職	177(100)	51(28.9)	37(20.9)	40(22.6)	43(24.2)	6(3.4)
漁村指導職	460(100)	26(16.3)	19(11.9)	77(48.1)	35(21.9)	3(1.8)
水產物検査職	104(100)	24(23.1)	22(21.1)	45(43.3)	10(9.6)	3(2.9)
合 計	741(100)	101(22.9)	78(17.7)	162(36.7)	88(20.0)	12(2.7)

() 속은 백분율

<표 4> 教官要員으로 派遣勤務되는 것을 희망하십니까?

區 分	合 計	希望한다.	條件充足時, 希望 한다.	希望하지 않는다.	希望하지 않으나 制度 자체는 바람직	無應答
水產研究職	177(100)	16(9.0)	53(29.9)	58(32.8)	36(20.3)	14(7.9)
漁村指導職	160(100)	9(5.6)	30(18.8)	82(51.2)	31(19.4)	8(5.0)
水產物検査職	104(100)	9(8.7)	32(30.8)	28(26.9)	33(31.7)	2(1.9)
合 計	441(100)	34(7.7)	115(26)	168(38.1)	100(22.7)	24(5.4)

() 속은 백분율

이것에서 자신들이 公務員教育院의 教官으로 파견되는 制度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1%가 肯定의 반응을 보였으며, 職種別로는 水產研究職이 50%로 가장肯定的이었다.

教官으로서의 活動에 필요한 教育方法 등에 관한 知識의 不足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7%를 차지하며, 專門職의 專門性 活用 측면만 생각하면 전체의 78%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므로 同 制度의 實施目的 자체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인 反應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應答者 본인이 직접 教官要員으로의 派遣되는 것을 희망하는 가에 대하여는 전체응답자의 3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본인은 희망하지는 않으나 制度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3%나 되었다.

3. 派遣期間 및 附帶條件

派遣期間 및 附帶條件에 대한 意見調査 結果는 <표 5>와 같다.

이것에서 派遣期間에 대하여는 1년 이하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60% 정도이고 2~3년이 적합하다는

<표 5> 派遣期間 및 條件에 대한 意見은?

(1) 派遣勤務期間

區 分	合 計	1년 이하	2년 이하	3년이상	무 응답
水產研究職	177(100)	118(66.7)	22(12.4)	9(5.1)	28(15.8)
漁村指導職	160(100)	97(60.6)	23(14.4)	13(8.1)	27(16.9)
水產物檢查職	104(100)	48(46.2)	22(21.2)	23(22.1)	11(10.5)
合 計	441(100)	263(59.6)	67(15.2)	45(10.2)	66(15.0)

() 속은 백분율

(2) 派遣公務員에 대한 待遇條件으로서 希望하는 것은?

區分	教材 研究手當	講義 手當	國內外 研修	厚生 福祉支援	專門 研究手當	人事 優待	派遣 勤務	其他
水產研究職	96	91	86	45	10	4	3	
漁村指導職	78	76	66	73	3	7		
水產物檢查職	46	45	57	45	9	2		2
合 計	220	212	209	163	22	13	3	2

(3) 原職復歸時의 特典賦與에 대한 意見은?

區 分	合 計	特典賦與	特典 不必要	無 應 答
水產研究職	177(100)	52(29.4)	79(44.6)	46(26.0)
漁村指導職	160(100)	43(26.9)	91(56.8)	26(16.3)
水產物檢查職	104(100)	47(45.2)	35(33.6)	22(21.2)
合 計	441(100)	142(32.2)	205(46.5)	94(21.3)

(4) 特典의 具體的 内容은?

區 分	特 典 的 内 容
水產研究職	人事上優待(3), 勤務評定加算(5), 昇進保障(3), 希望部署配置(3), 人事上加点(11), 派遣後 所屬機關復歸(3), 號俸昇級(1), 國內外研修(1), 厚生福祉支援(1), 業務空白防止對策必要(1)
漁村指導職	業務空白 防止對策必要(2), 勤務終了後 希望部署 優先配置(3), 勤務評價加算(6), 人事上特典(7), 補職人事에 대한 反映(1)
水產物檢查職	希望部署勤務(9), 勤務評定加算(14), 5年以上 轉補禁止(1), 人事上 特別規程新設(8), 昇進對象優先適用(20), 關聯專攻分野勤務(1)

의견도 25%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公務員任用令 제41조에서 公務員의 派遣勤務期間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現行規程의 내용과 부합한다.

派遣敎官의 待遇에 관해서는 教材研究手當, 講義手當, 國內外 研修費, 厚生福祉費 등의 支給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原職復歸時의 特典賦與에 대한 의견도 特典賦與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이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6%여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적었다. 그러나 이 制度의 成功的 實現을 위해서는 人事上 優待, 勤務評定 加算, 希望部署 優先配置 등 적절한 後續措置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 專門性의 水準

教官으로서의 專門性에 관하여는 調查對象者가 모두 그 職務의 性格上 상당한 理論과 技術을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 水產研究職 및 漁村指導職의 경우는 任用 당시 일정한 學歷과 그에 상응하는 資格證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專門性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水產物檢查職의 경우는 任用 당시에는 資格證 소지가 필수요건이 아니었으나 그 후 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資質向上을 위하여 資格證取得을 권장하고 있어서, <표 6>과 같이 6급 이하 전체 현원 114명 중 101명(88.6%)이 職務遂行에 필요한 資格證을 소지하고 있어서 직종에 상응하는 專門性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들 3가지 職種이 다같이 고도의 專門性을 요하는 직무의 성격상 現職勤務經歷이 중요한데, 調査結果(<표 2의 (3)>) 11년 이상의 經歷者만 해도 전체의 66%에 달하여 그에 대한 요구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最終學校의 專攻分野도 水產業의 각 분야에 폭넓게 分布하고 있으며(표 7), 教官으로 파견되었을 때 講義를 담당할 수 있는 教科目 <표 8>도 고루 분포하고 있어서 教育院에서 개설하는 教育課程의 대부분을 카바할 수 있다.

<표 6> 檢查公務員 職級別 國家技術資格 取得現況

(1992. 8. 31 현재)

資格區分 職級別	計	資	格	等	級	未取得
		小計	技術士	1級	2級	
水產技士	34	27	-	13	14	7
水產技士補	39	34	-	19	15	5
水產技員	41	40	1	29	10	1
計	114	101	1	61	39	13

<표 7> 水產關聯 最終學校 專攻分野?

區 分	專 攻 分 野
水產研究職(177)	水產養殖(38), 遺傳育種(3), 魚病(7), 水產生物(24), 漁具漁法(14), 漁具工具學(1), 水產加工(14), 食品工學(8), 水產資源(5), 水產經營(5), 環境工學(7), 海洋物理(6), 無應答(43)
漁村指導職(160)	水產加工(223), 水產增養殖(72), 漁具漁法(20), 漁船機關(7), 其他(1), 無應答(37)
水產物檢查職(104)	水產加工(56), 食品工學(8), 化學(1), 其他(15), 無應答(24)

() 속은 인원수

<표 8> 教官要員으로 派遣勤務時 講義를 담당할 수 있는 教科目은?

* () : 인원수

區 分	內 容
水產研究職(91)	水產資源(5), 水產增養殖(35), 魚類學(30), 水產生物學(2), 魚類疾病(5), 魚類種苗生產(3), 遺傳育種(1), 水族病理(1), 水產加工(7), 海洋學(11), 環境分野(2), 漁具漁法(7), 集魚燈活用法(1), 水中音響學(2), 海洋生態(1), 漁況豫測(1)
漁村指導職(43)	水產加工(3), 水產增養殖(26), 種苗生產(1), 水產生物(2), 漁具漁法(4), 漁業指導(1), 漁業經營(1), 航海(1), 水產行政(1), 漁村指導 및 漁村의 現實(1), 水產經濟(1), 水產關係法規(1)
水產物檢查職(63)	水產物檢查(1), 水產加工(48), 水產貿易(1), 水產物關係法規(1), 食品微生物(20), 食品污染(1), 食品微生物(4), 水產化學(1), 其他(4)

IV. 期待되는 效果와 問題點

1. 教官의 專門性 確保

教育訓練機關에의 公務員派遣制度의 活用은 專門性을 갖춘 教官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各部處別 研究職, 指導職 또는 이와 유사한 性格을 갖춘 專門職 公務員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반 教官人事가 단순히 職級, 經歷, 學歷 등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專門性 確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할 수도 있다.

行政의 專門化 추세에 따라 教育內容의 專門的 需要是 점차 증대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教育에 대한 專門性 要求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任用 당시 일정수준의 專門知識을 갖추고 任用 이후 담당한 業務에 상당한 經歷을 쌓은 專門職 公務員을 教官으로서 派遣勤務케 하는 것은 一般教官人事에 의해서는 확보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制度이다.

2. 教官의 量的 需要 解消

公務員의 職務修行能力 向上을 위한 教育訓練은 質的 水準 뿐만 아니라 量的으로도 함께 증대되어야 하며, 行政環境의 급속한 변화로 專門教育 위주로 추진되어야 할 公務員 教育需要에 效率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教官의 역할도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行政機關의 定員 擴大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教育訓練機關의 教育需要 增大에 따른 教官數의 增加措置도 극히 制限的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公務員派遣制度 활용에 의한 專門教官의 確保는 教官의 量的需要解消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專門職 公務員의 教授活動을 통한 現場經驗 蕎積

本研究의 대상이 되고 있는 專門職 公務員의 職務性格上 現場과의 交流는 평소에도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時間的, 財政의 인 차원에서 制限的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專門職 公務員이 教育訓練機關에서 擔當職務 分野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면서 研究結果 또는 職務遂行에서 얻은 水準 높은 技術을 一線公務員에게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被教育者와의 對話 를 통하여 一線公務員의 業務遂行上의 問題點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派遣을 마치고 原職으로 復歸한 후 더욱 現場感 있는 業務遂行이 가능할 것이므로 二重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4. 教官 派遣制度 活用上의 問題點

本研究에서 제시된 派遣制度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制度的 補完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 중요한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 中央官署長(人事權者)의 教育에 대한 重要性 認識과 本 制度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소 制度의 人事交流가 거의 없는 傘下機關에 대한 人事行政이므로 教育의 발전과 내

實化를 위한 강한 目的意識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意志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 總務處의 적극적인 支援이 뒤따라야 한다. 教育訓練機關으로서의 教官派遣은 기본적으로 1년 까지 가능하며, 그 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派遣을 보내는 機關의 業務空白을 방지하기 위하여 總務處의 승인으로 별도 定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教育訓練機關의 機構改編 혹은 定員의 擴大 등이 매우 어려운 狀況下에서 專門教育 中心의 教育訓練體制 改編計劃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教育訓練機關의 專門性 제고를 위한 派遣制度 活用이 極大化 될 수 있도록 별도 定員에 대한 적극적인 승인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 派遣勤務者의 厚生福祉가 병행되어야 한다. 派遣勤務者는 일시적으로 生活根據地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個人的인 不利益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다른 각도에서 우대하므로서 우수한 人力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調查結果 나타난 의견과 같이 人事上 우대, 勤務評點의 加算, 手當의 新設 등 점진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V. 結論

公務員教育訓練機關에서의 專門性을 갖춘 教官確保을 위한 制度活用의 活性化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水產廳 산하 專門職公務員을 公務員教育院에 教官으로서 派遣勤務하게 하는 制度에 관하여 說問調查를 실시했다.

그 결과 現行 教官人事制度만으로는 教育訓練機關이 필요로 하는 質的水準이 높은 教官의 確保는 곤란할 것이며, 外來講師에 의한 補完도 일정 수준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專門性을 갖춘 教官의 確保를 위하여 制度의 改編, 法令의 改正 등을 추진하기 보다는 實現이 가능한 派遣勤務制度의 積極的 활용이 바람직하며, 派遣對象으로서는 專門職으로서의 要件을 갖춘 各部處別 研究職, 指導職, 檢查職 公務員이 적합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專門職 公務員의 公務員教育訓練機關 派遣制度에 대한 인식은 매우 肯定的이며, 적극적인 參與意思가 높아 制度 시행시 상당한 效果가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謝辭

이 論文의 作成을 시종 지도하여 주신 釜山水產大學交 李秉鎬 教授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參考文獻

李敦熙：“教育改革과 教師”，教育學研究 19卷 3號，韓國教育學會，1981.

金丁煥：“過去 現在 未來의 바람직한 教師像”，教育學研究 19卷 3號，韓國教育學會，1981.

金豪權：“바람직한 教師의 養成”，韓國教育學會，教育學研究 19卷 3號，1981.

崔琛承 崔俊植 金周達：“成人教育의 特性과 原理에 대한 理論的 考察”，中央教育研修院，研修論聰，4卷 2號，1986.

金周達：“成人教育者(教官)의 能力展望을 위한 研修프로그램 開發”，中央教育研修院，研修論聰，5卷，1987.

심상률：“教育專門職 養成課程의 發展的 課題”，中央教育研修院，研修論聰，9卷，1987.

洪性齋：“教官의 任務와 使命”，教育訓練情報，中央公務員教育院，1984.

[부 록]

＊ 전문직 교관확보제도 연구를 위한 설문서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원에서는 급증하는 수산분야 전문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전문직교관 확보를 위한 "교관인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직(수산연구, 어촌지도, 수산물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하오니 바쁘신 중에 죄송하오나 평소 생각하시는대로 기坦없이 응답 하시어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992. 7.

수산공무원교육원

＊ 전문직 교관확보제도 연구를 위한 설문서 ＊

우리 교육원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당해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일반적인 행정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직급별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을 함께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급증하는 전문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중심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 교육원에서도 급증하는 수산분야의 전문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관의 확보를 위한 제도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직(수산연구, 어촌지도, 수산물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직 교관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코자 합니다.

*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직급은?

- | | | |
|--------------|---------|---------------|
| ※ 수산연구직 | ※ 어촌지도직 | ※ 수산물검사직 |
| () 연구관(과장급) | () 지도관 | () 4급 () 7급 |
| () 연구관 | () 지도사 | () 5급 () 8급 |
| () 연구사 | () 6급 | () 9급 |

2. 귀하의 최종학력은?

- | | | |
|--------------|--------------|---------|
| () 고졸이하 | () 전문대졸 | () 대학졸 |
| () 대학원졸(석사) | () 대학원졸(박사) | |

3. 귀하의 수산관련 최종학교 전공분야는?

- ()

4. 귀하의 공무원 근무경력은?

- | | | |
|------------|------------|------------|
| () 3년 미만 | () 3~5년 | () 6~10년 |
| () 11~15년 | () 16~20년 | () 21년 이상 |

5. 귀하의 전문직(수산연구, 어촌지도, 수산물검사) 공무원 근무경력?

- | | | |
|------------|------------|------------|
| () 3년 미만 | () 3~5년 | () 6~10년 |
| () 11~15년 | () 16~20년 | () 21년 이상 |

6. 귀하의 연령은?

-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 이상

7. 수산관련 전문직(수산연구직, 어촌지도직, 수산물검사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수산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으로 파견케 하는 제도를 실시한다면,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공무원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 및 담당 전문직무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 () 예산 확보, 인력 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보직경로와 직무훈련을 연계한 시의성 있는 실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 ()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되나 교수방법이나 교안 연구 등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제도이다.

() 전문분야 직무수행에 대한 흐름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다.

8. 수산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수산공무원교육원에 교관요원으로 파견근무케 하는 제도를 실시할 경우, 파견기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6개월 미만이 적당하다. () 6개월~1년 정도가 적당하다.
() 2년 정도가 적당하다. () 3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9. 수산관련전문직 공무원을 수산공무원교육원에 파견근무케 하는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한 대우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이상 기재해 주십시오.

1) 2) 3) 4)

10. 수산관련 전문직 공무원의 수산공무원교육원에의 파견근무가 실시될 경우, 귀하는 교관요원으로서의 파견근무를 희망하십니까?

() 희망한다.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희망한다.
() 희망하지 않는다. () 본인은 희망하지 않으나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

11. 귀하가 수산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으로 파견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업무경력 및 전공을 고려할 때 어떤 분야(또는 교과목)의 강의를 원하십니까?
※ 가능한 분야(또는 교과목)를 구체적으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12. 전문직 공무원의 교육원 파견근무 종료후 소속기관 복귀시에 부여할 수 있는 특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특전을 부여해야 한다. () 특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 특전을 주어야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

13. 기타 교육훈련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언은?

Securing Status and Improving Scheme of Instructors in the Governmental Officials Training Facilities

I . A Survey on the Opinion Concerning the Despatching Service System of Fisheries Specialized Officials as Instructors to the Fisheries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Chul - Ho CHANG · Youn - Sik KIM · Young - Do KIM

(Fisheries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scheme to secure the specialized instructors in the governmental officials training facilities, the authors made a survey on the opinion concerning the despatching service system of officials as instructors to the Fisheries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on the fisheries specialized officials in the Fisheries Agency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

The obtained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exiting personnel management system has a lot of difficulties to secure the specialized instructors. Even though the difficulties may be solved by inviting part-time instructors to some extent, it is remote from the goal. The active utilization of despatching service system of specialized officials to the Institute as instructors during the limited term will be effective rather than re-arrangement of personnel system or amendment of laws and ordinances to secure the specialized instructors.
2. The responce of specialized officials who are objected in the present survey on the despatching service system to the Institute appeared to be affirmative considerably, and then the despatching service system may be expected of high efficiency in its realization.